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6가합545045 판결 [구상금등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유한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8. 4. 12.

판결 선고2018. 5. 10.

주 문

1. 피고 유한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7,836,110원 및 그 중 3,057,834,937원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7. 3. 3.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C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4.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청구권의 발생

1)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15. 8. 10.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D공사 터널공사(제3구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1)의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포스코건설에게 제공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신용보증기간, 신용보증원금,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채권자는 다음과 같다.

2015. 8. 10. ~ 2017. 2. 28.	3,061,410,000	피고 A	피고 B	포스코건설
-----------------------------	---------------	------	------	-------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주채무자로서,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즉 대위변제한 돈,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⑥ 위 ③과 ④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⑦ 대위변제수수료를 상환하고, 피고 B도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위와 같은 돈을 상환하기로 각각 약정하였다.

2) 원고의 대위변제 가) 피고 A이 장비업체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4. 16.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중단되자, 포스코건설이 2016. 4. 18., 2016. 4. 25., 2016. 4. 28. 3차례에 걸쳐

피고 A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포스코건설은 위와 같은 공사이행 촉구에도 피고 A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재개하지 않자, 2016. 5. 23.과 2016. 5. 31. 2차례에 걸쳐 피고 A에게 공사계약일반약관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여 위 통지가 피고 A에게 도달하였고, 2016. 5. 24. 원고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포스코건설의 위 청구를 받고 2016. 6. 28. 포스코건설에게 계약이행보증금 3,061,41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과 관련된 손해금과 지연배상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은 연 10%로 정해졌다. 또한 원고는 대위변제금과 관련하여 2016. 6. 28. 3,527,705원, 2016. 7. 13. 47,358원 합계 3,575,063원을 회수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포스코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3,057,836,110원[= 남은 대위변제금 3,057,834,937원(= 대위변제금 3,061,410,000원 - 회수금 합계 3,575,063원) + 손해금 966원(= 2016. 6. 28.자 회수금 3,527,705원 ×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 비율인 연 10% × 보증채무이행일인 2016. 6. 28.부터 회수일인 같은 날까지 1일, 원고가 구하는 것에 따라 원 단위 미만은 버림) + 손해금 207원(= 2017. 7. 13.자 회수금 47,358원 ×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 비율인 연 10% × 보증채무이행일인 2016. 6. 28.부터 회수일인 2016. 7. 13.까지 16일, 원고가 구하는 것에 따라 원 단위 미만은 버림)] 및 그 중 남은 대위변제금 3,057,834,93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6.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7. 3. 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및 피보전채권의 발생 가) 피고 B이 2016. 1. 14. 피고 C과 사이에 근저당권자 피고 C,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6. 3.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이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또한, 갑 제4, 13, 19, 21,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스코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 A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무렵인 2016. 2.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6. 2. 15. 포스코건설에게 2016. 4.까지 10억 원을 출자하여 위 미지급 장비대금을 처리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점, ② 피고 A이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의 주식회사 세안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매출채권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2016. 1. 14.)로부터 2개월 17일 후인 2016. 3. 31. 주식회사 세안에게 물품대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보험사고를 일으켜 주식회사 세안이 원고에게 23,770,5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점, ③ 피고 A이 미지급 장비대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포스코건설에게 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2016. 1. 14.)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6. 4. 16. 장비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인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해지가 초래된 점, ④ 피고 A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2016. 1. 14.)로부터 5개월 16일 후인 2016. 6. 30. 기업회생신청을 하였을 뿐 아니라 약 6개월 후인 2016. 7. 18. 폐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중단 및 불이행이 초래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해지 사유인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중단이 2016. 4.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위와 같은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2016. 6. 28. 계약이행보증금 3,061,410,000원을 포스코건설에게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B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 가) 갑 제9호증,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6. 1. 14.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강릉시 E아파트 가동 1707호, 원주시 F, G에 있는 H아파트 104동 208호가 있으며, 위 각 부동산들의 가액은 합계 688,347,000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513,347,000원²) + 강릉시 E아파트 가동 1707호의 시가 100,000,000원 + 원주시 F, G에 있는 H아파트 104동 208호의 시가 75,000,000원)인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원금 3,061,41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나 피고 B의 다른 소극재산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6. 1. 14. 당시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항변 기준에 피고 B에 대하여 12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B이 2016. 1.경 추가로 80,000,000원의 대여를 요청하여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권에 포함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15. 피고 B에게 8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계속을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피고 C이 피고 B과 지인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와 같은 피고 C과 피고 B의 관계, 앞서 제2의 가.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시기 및 당시 피고 A의 재무상황,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추가 80,000,000원의 대여를 뒷받침하는 자료 및 위 돈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 등의 사업추진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거나 피고 C이 선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판사박종택

판사김용신

판사서지혜

별지

1) 피고 A은 2014. 4. 3. 포스코건설과 사이에 'D공사 터널공사(제3구간)'에 관한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14. 위 공사에 관한 계약변경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0. 6.을 기준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513,347,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6. 1. 14. 당시 시가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